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

[시행 2026. 2. 20.] [충청남도조례 제6087호, 2026. 2. 20., 일부개정]

충청남도

제5장 미술작품의 설치 등

제15조(권장 대상건축물) 도지사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.<개정 2026. 2. 20.>

1. 공동주택(5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제외한다)
2. 업무시설
3. 숙박시설
4. 판매시설
5. 위락시설
6. 방송통신시설(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
7. 의료시설 중 병원
8.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집회장

제15조의2(창작공간의 설치 및 지원) <개정 2026. 2. 20.> 도지사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문화예술창작공간(이하 "창작공간"이라 한다) 설치 및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 <개정 2026. 2. 20.>

제15조의3(창작공간 활성화 사업) 도지사는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<개정 2026. 2. 20.>

1. 예술인 창작공간 및 활동 지원사업
2.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
3.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사업
4.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예술 사업
5. 그 밖에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15조의4(홍보 및 지원) ① 도지사는 창작공간에 관한 인식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간행물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.<개정 2026. 2. 20.>

② 도지사는 시장·군수가 창작공간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개정 2026. 2. 20.>

제5장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<개정 2026. 2. 20.>

제16조(설치)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.<개정 2026. 2. 20.>

②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착공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감정·평가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심의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.

1. 작가경력서(별지 제2호서식)
2. 대행인 경력서(별지 제3호서식)
3.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 내역서(별지 제4호서식)
4. 미술작품 설치 금액 사용 계획서(별지 제5호서식)

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건축물 미술작품 감정·평가 심의 신청서를 충청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.

⑤ 도지사는 충청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감정·평가 결과를 해당 건축주에게 통지 및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.

⑥ 제5항의 감정·평가 결과에 대하여 해당 건축주는 도지사에게 구체적 사유를 공개 요청할 수 있다.

제16조의2(공모를 통한 설치) ① 도지사는 제16조에 따른 건축주에게 공모를 통하여 작품을 제작·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,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 공모 및 작품 선정을 대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건축주는 공모를 통해서만 미술작품을 제작·설치할 수 있다.
③ 도지사는 공모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, 선정은 충청남도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따른다.
④ 제3항에 따라 선정된 미술작품은 제21조의 감정·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⑤ 그 밖에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[본조신설 2026. 2. 20.]

제17조(설치 확인) ① 도지사는 건축주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제16조의 감정·평가 결과에 따라 미술작품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.<개정 2026. 2. 20.>
② 도지사는 건축허가권자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(준공)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고 확인하여야 한다.<개정 2026. 2. 20.>
③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확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8조(사후관리) ① 도지사는 제17조에 따라 설치 확인된 미술작품에 관하여 미술작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.<개정 2026. 2. 20.>
②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을 이전·변경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물 미술작품 이전·변경 설치 심의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도지사는 제16조제4항에 따라 처리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.<개정 2026. 2. 20.>
③ 삭제<2026. 2. 20.>
④ 삭제<2026. 2. 20.>

제19조(건축비용의 비율)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.
1. 「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2조제2항제1호의 공동주택(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) : 건축비용의 1천분의 1<개정 2026. 2. 20.>
2. 영 12조제2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(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) : 건축비용의 1천분의 5<개정 2026. 2. 20.>

제6장 충청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

제20조(설치금액의 산정) 미술작품 설치금액은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건축비용에 제19조의 건축비용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.<개정 2026. 2. 20.>

제21조(심의위원회의 설치)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·평가를 위해 충청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 라 한다)를 둔다.<개정 2023.3.10.>
② 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해산한다.<신설 2023.3.10.>

제22조(기능)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정·평가한다.
1. 미술작품의 가격: 적정성(작가경력, 비용내역 등), 계약의 합리성 등<개정 2026. 2. 20.>
2. 미술작품의 예술성: 조형미, 형식미, 내용미, 독창성 등<개정 2026. 2. 20.>
3.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: 환경과의 친화성 등<개정 2026. 2. 20.>
4.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: 설치 위치의 적절성,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 등<개정 2026. 2. 20.>
5. 미술작품 공모 및 작품선정의 대행<신설 2026. 2. 20.>
6. 그 밖에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<개정 2026. 2. 20.>

제23조(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10명 이내로 구성한다.<개정 2023.3.10.>
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개최시마다 출석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심의위원회 회의의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한다.
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.<개정 2023.3.10.>
1. 미술, 건축, 환경, 공간디자인, 도시계획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<개정 2023.3.10.>
2. 문화예술, 예술경영, 행정 분양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중 미술, 건축, 환경, 공간디자인, 도시계획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람<개정 2023.3.10.>
3. 제1호와 제2호의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사람<개정 2023.3.10.>
4.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도의원 3명으로 한다.<개정 2023.3.10.>
④ 삭제<2023.3.10.>
⑤ 삭제<2023.3.10.>
⑥ 삭제<2023.3.10.>

제24조(심의위원회 회의의 운영) ① 삭제<2023.3.10.>
② 도지사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의 일시, 장소,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심의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<개정 2023.3.10., 2026. 2. 20.>

제25조(심의위원의 의무) 심의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, 미술작품의 감정·평가 결과에 책임을 진다.<개정 2026. 2. 20.>
② 삭제<2026. 2. 20.>
1. 삭제<2026. 2. 20.>
2. 삭제<2026. 2. 20.>
3. 삭제<2026. 2. 20.>

제26조 삭제<2023.3.10.>

제27조(심의위원회 회의의 비공개)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감정·평가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.
1.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
2. 감사·계약·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 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
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.

제28조(심의위원회의 간사)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,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관련 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팀장이 된다.
②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, 서기는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간사를 보조한다.

제29조 삭제<2026. 2. 20.>

제30조 삭제<2026. 2. 20.>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(조례 제4386호, 2018. 10. 1.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조례 제4605호, 2019. 10. 30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조례 제5256호, 2022.8.10.>(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⑦ 「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3항 중 “문화체육부지사”를 “행정부지사”로 한다.

부칙 <조례 제5359호, 2023.3.10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조례 제5785호, 2024. 12. 30.>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개정) ㊹ 「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중 「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를 「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로

한다.

제29조 중 「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를 「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로 한다.

부칙 <조례 제6087호, 2026.2. 20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